**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204호**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90호, 2016.9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**2016년 10월 31일**

**보건복지부장관**

부 칙

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.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항 목** | **제 목** | **세부인정사항** |
| 너153기타 비타민  | 비타민 D검사의 급여기준 | 너153 기타 비타민 검사 중 비타민 D (D2, D3 및 total D)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. - 다 음 -가. 적응증1)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2) 항경련제(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)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3) 간부전, 간경변증4) 만성 신장병5) 악성종양6) 구루병7)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8)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회, 비타민 D 투여 3~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이 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9) 체표면적 40% 이상 화상나. 기타1) 비타민 D (D2, D3 및 total D) 검사는 1종만 인정2) 선별 검사로 HPLC법(너153주1)은 인정하지 아니함 |